

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

I . 예비비 지출 현황 (2건)

- 지출결정액 : 7억 9천 5백만원
- 지출액 : 7억 9천 5백만원
- 이월액 : 0원
-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 : 0원

-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률 0.0%가 발생하였음.

〈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〉

(단위: 천원)

세부사업	통 계 목	지출 결정액	지출원인 행위액	지출액	이월액	집행 잔액
계		795,214	795,214	795,214	-	-
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	기타반환금등	230,659	230,659	230,659	-	-
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	시설비	564,555	564,555	564,555	-	-

II. 검토의견

가. 재무국 예비비지출 승인안 개요

- 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은 2건으로, 7억 9천 5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 9천 5백만원을 지출하였음.

※ 2022회계연도 재무국 예비비 지출: 3건, 15억 7,799만 6천원

〈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〉

(단위: 원)

조직	과 목			지출결정액	지출액	지출잔액	처리일자		예비비지출유사
	단위	세부	통계목				지출결정일	지출일	
합 계				795,214,000	795,213,300	700			
재산관리과	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	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	시설비	564,555,000	564,554,630	370	2023-01-09	2023-01-11	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유재산 분할납부 상승 이자율 적용
	보전지출	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	기타변환금등	230,659,000	230,658,670	330	2023-01-09	2023-01-11	

- 예비비는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을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과목임.
- 「지방자치법」(제144조)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,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강행 규정하고 있고,
- 「지방재정법」(제43조)에서는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 총액의 1% 범위 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강행 규정하고 있음.

- ※ 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(2014.10.20. 제정)에 따라 각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고 있음.
- ※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는 각 예산 총액의 1% 이내의 금액을,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음.
- ※ 「지방자치법」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 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※ 「지방재정법」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〈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〉

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

그룹	편성목	설정 (통계목 포함)	비고
800	예비비및기타		
	801 예비비	01. 일반예비비 1.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(한도 범위 내 편성 필요)	
		02.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1.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(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음)	
		03. 내부유보금 1.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	

○ 재무국의 예비비지출은 총 2건으로,

- SH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(2021.12.27.)한 구(舊) 북부지방검찰청 및 북부 지방법원 부지 매입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액과
-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(서초구 원지동) 취소로 보건복지부와 매매계약(2021.4.5.) 합의해제에 따른 매각수입 반환금의 분할납부 이자액에 대하여
- 예산 편성 후 기준금리의 인상(3.6% → 4.34%)에 따른 지출 이자 부족분(2건, 7억 9천 5백만원)을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출(2023.1.11.)하였음.

〈 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〉

(단위: 천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예산액	금회 지출액		승인일자
	세부 사업	통계 목		증	감	
예 산 담당관	예비비	일반예비비	108,122,946	-	△795,214	'23.1.9
재 산 관리과	시설 안전관리 및 재산교환*	시설비	23,433,000	564,555	-	
	공유재산 매각 수입 반환금	가타변환금 등	16,442,986	230,659	-	

* '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'의 경우, 예산액 및 금회소요액에 별도 사업인 '시설안전 수선비 및 재산교환 차액 등'(350백만원)이 포함된 금액임.

【시유재산 거래대금 분할납부 개요】

▶ 추진 근거

- 舊 북부지검/지법 재산(공릉동) 취득계획(자산관리과-13242호, '21.12.27.)
-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부지(원지동) 매매대금 반환계획(자산관리과-7180, '21.7.9.)

▶ 추진개요

- 舊 북부지검·지법 매입액 분할납부(2차) : 236억원(이자 35억원 포함)
 - SH공사 소유의 舊 북부지검/지법 재산(노원구 공릉동 622, 토지 13,210㎡, 및 건물 18,031㎡)
 - 매입대금에 대한 2차 분납액 납부(총 970억원을 '22~'26년간 5회 분납)
- 원지동 시유지 매각 수입 반환금 분할납부(2차) : 167억원(이자 13억원 포함)
 -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취소로 시유지인 서울추모공원 부지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됨에 따라,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한 2차 반환금 납부

나. 예비비지출 전별 검토

1) 구(舊) 북부지검·지법 매입액 분할납부 이자 부족분

- 본 건은 SH공사로부터 매입한 노원구 소재(공릉동) 구(舊)북부지방검찰청 및 북부지방법원 청사 부지(13,209.7㎡)와 건물(16,255.6㎡) 대금(총 970억원, 총 5회 분납) 중 2회차 분납금(201억 8천 5백만원)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, 부족한 지급이자(예산편성 시에 비해 인상된 기준금리 적용으로 인한 부족분)를 예비비(5억 6,455만 5천원)로 지출(2023.1.11.)한 것임.

舊 북부지방검찰청·북부지방법원 매입액 분할납부

- 추진근거 : 舊 북부지검/지법 재산 취득계획(자산관리과-13242호, '21.12.27.)
- 취득재산 : 노원구 공릉동 622 (토지 13,210㎡, 건물 18,031㎡)
- 소유자 : 서울주택도시공사
- 매입가액 : 총 970억원 (감정평가수수료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, 분납이자 별도)
- '21.12.27.매입계약 체결, 5년간('22~'26년) 분납금 납부 후 '26년 소유권 이전 예정

(단위 : 원)

연도	계약금	2022년(1차)	2023년(2차)	2024년(3차)	2025년(4차)	2026년(5차)
분납원금	6,600,000,000	9,930,916,210	20,184,828,500	20,087,566,810	20,087,566,810	20,087,566,810

※ 분할납부 기간 중 서울시 무상 사용(서울생활사박물관, 서울여성공예센터 등 4개 공공시설)

○ 예비비 산정 내역

예산과목	예산액(A)	집행예정액(B)	필요액(B-A)	비고
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(시설비)	23,433,000,000	23,997,554,630	564,554,630	※ 예산액 및 집행예정액에 시설안전수선비 등 별도 사업비(350백만원) 포함

<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>

(단위: 원)

과 목			지출결정액	지출액	지출잔액	처리일자		예비비지출사유
단위	세부	통계목				결정일	지출일	
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	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	시설비	564,555,000	564,554,630	370	2023-01-09	2023-01-11	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사유재산 분할납부의 상승된 이자율 적용

2) 원지동 사유지 매각수입 반환금 분할납부 이자 부족분

- 본 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계약이 해제되어, 서울시는 기 수령한 매각대금을 보건복지부에 반환(2024년 12월, 3회 분납)해야 하나, 2023년 분납금(2회차)에 포함된 분납이자가 상승(기준금리 인상)하여 부족한 분납이자 부족분 2억 3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임.

※ 본 예비비 지출의 건은 국립중앙의료원(중구 을지로6가)을 서울추모공원 부지(시유지, 서초구 원지동)로 이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시유재산 매매계약 체결(732억 9천 1백만원, 2016.12.8.)하고, 매각대금(466억 2천 3백만원)을 수납한 후 계약의 합의해제(2021.4.5.)되었음.

· 수납액을 2024년 12월 이전까지 3회에 분납하여 반환(용역비 6억 7백만원 제외, 이자 포함, 반납액 460억 1천 6백만원)하려는 것으로, 기 편성한 2회차(2023년도분) 분납금(분납원금+분납이자)을 편성했으나,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예산 편성 당시에 비해 늘어난 분납이자(2억 3천만원)를 예비비로 지출(2023.1.11.)한 것임.

〈 사유재산 매각 계약 내역 〉

재산명칭	소재지	지목	면적 (m ²)	매각금액 (백만원)	계약 체결일	매수자	비 고
원지동 종합의료시설 예정부지	서초구 원지동 34-11 외 59필지	전, 답 임야	60,002	73,291	'16.12.8	보건 복지부	5회 분납('17~'21년) 납부 기일(매년 12.1)

〈 매각대금 납부 현황 〉

연도별	'16.12월 (계약금)	2017년 (1차)	2018년 (2차)	2019년 (3차)	2020년 (4차, 부과 유예)	2022년 (5차)
납부액	52억원	105억원	288억원	21억원(분납이자)	144억원	144억원

※ 총 466억원(계약금 52억원, 중도금 393억원, 분납이자 21억원)

〈 반환금 연차별(3회) 분할 지출 계획 〉

(단위: 원)

연도별	2022년	2023년	2024.12. 이전
분납 원금(460억원)	15,338,606,000	15,338,606,000	15,338,606,590

□ 원지동 사유지 매각수입 반환금 분할납부

- 반환사유 :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서울추모공원 부지(서초구 원지동 34-11 외 59필지, 60,002㎡) 매매계약 합의 해체에 따라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보건복지부로 반환
 - 보건복지부와 매매계약 체결('16.12.8.) → 원지동 부지 매매계약 해제 합의각서 체결('21.4.5.)
 -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부지(원지동) 매매대금 반환계획 수립(자산관리과-7180호, '21.7.9.)
- 반환금액 : 총 460억원 (분납이자 별도, 2024년 까지 3회 분납)

(단위 : 원)

연도	2022년(1차)	2023년(2차)	2024년(3차)	비고
분납원금	15,338,606,000	15,338,606,000	15,338,606,590	1차 반환금 반납 완료

○ 예비비 산정 내역

(단위 : 원)

예산과목	예산액(A)	집행예정액(B)	필요액(B-A)	비고
공유재산 매각수입 환급(기타반환금등)	16,442,986,000	16,673,644,670	230,658,670	

□ 추진경위

○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

- 서울추모공원 부지(서초구 원지동)로 신축·이전 추진
 - '14.12.04 : 서울시-복지부 간 신축·이전 업무협약체결(보건의료정책과)
 - '16.12.08 : 서울시-복지부 간 매매계약 체결(자산관리과)
- 「미 공병단 부지(중구 방산동)」로 신축·이전 추진
 - '19.09.08 : 국립중앙의료원 '원지동 이전 추진 중단' 언론발표
 - '20.07.01 : 서울시-복지부 간 신축·이전 업무협약 체결(보건의료정책과)
 - '21.04.05 : 서울시-복지부 간 합의각서(MOA) 체결(보건의료정책과)

<202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>

(단위 : 원)

과	목		지출결정액	지출액	지출잔액	처리일자		예비비지출사유
	단위	세부				통계목	결정일	
보건지출	공유재산매각수입환급	802-03 기타반환금등	230,659,000	230,658,670	330	2023-01-09	2023-01-11	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사유재산 분할납부의 상승된 이자율 적용

<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>

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

그룹	편성목	설정 (통계목 포함)	비고
800	예비비및기타		
	802 반환금기타	03. 기타 반환금 등 1. 과오납금, 반환금, 수표지불미청산금, 상환금, 기타 반환금 ※ 「지방회계법」 제28조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수입금에서 직접 반환하는 경우 제외	

3)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

○ 본 예비비 사용(2건)은 기준금리 인상*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이자 지급을 위한 것으로, 예비비를 사용 이유에 대해 재무국은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부족한 금액을 확보하는 경우 그 지체한 기간만큼 이자액이 증가하여 예산 절약을 위해 연초에 신속히 예비비를 사용(2023.1.11.)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.

※ 이자율: 해당 예산편성 당시 3.6% → 2023년 1월 현재 4.34%

※ 북부지검·지법 매입액 분할납부 관련: 2022회계연도 예산조정 없음. 2023회계에 예비비 최초 사용

※ 원지동 사유지 배각수입 반환금 분할납부 관련: 2022회계연도는 추가경정예산편성, 2023회계연도는 예비비 사용

○ 다만,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재정법」에서는 예비비를 예산절약을 위한 것이 아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「지방자치법」(제17조)에서는 예산의 심의·확정을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,

- 예비비를 사용한 예산의 조정은 해당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나 심의·의결 없이,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형식적 절차로 인하여 의회 의결권을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, 그 사용 범위는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.

-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에 다른 이자 상승분을 본 예비비 사용을 통해 지출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
○ 또한 2개 사업의 시유재산 거래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지급이자 규모가 한 해 48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,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잔여 거래대금을 일시 납부하여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□ '23년 시유재산 거래대금 납부액 (원금 355억원, 지급이자 48억원, '23.1.11. 기준)

○ 舊 북부지검·지법 매입 2차 분납액

- 23,647,554천원 = 20,184,828천원(원금) + 3,462,726천원(이자)

○ 원지동 시유지 매각수입 반환금 2차 분납액

- 16,673,645천원 = 15,338,606천원(원금) + 1,335,039천원(이자)

전문위원

정 찬 일

입법조사관

최 석 훈